| 산업통상자원부 | 보 도 자 료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| 보도 일시 | 2023. 2. 22.(수) 11:00<br>< 2. 23.(목) 조간 > | 배포 일시 | 2023. 2. 22.(수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에너지정책관<br>에너지효율과 | 책임자 | 과 장 김현철 (044-203-514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박정진 (044-203-5149) |

#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

## -「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· 등급표시제도」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「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**에 대해 **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**한다고 밝혔다.

○ 산업부는 최근 **전기차 시장 확대**와 함께 제작·수입되는 **차종(모델) 수도 빠르게 증가***함에 따라 **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**가 있다는 인식 아래,

*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(대) : ('17) 2.5만 → ('22) 39.0만
최근 3년 인증모델수(개) : ('17) 12 → ('22) 148

○ **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**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❶**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(이하 '전비')에 따른 효율등급(1~5등급) 기준을 신설**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, ❷**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**하고, ❸**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**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1 먼저, **전기차 전비에 따른 1~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**하고 **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**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.

○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**2012년부터**

**전기차도 전비(km/kWh) 및 1회충전 주행거리(km)를 외부에 표시**하고 있으나,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**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.**

○ 개정안은 **세계 최초*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·광고**하도록 함으로써,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**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**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**정보제공을 강화**할 예정이다.

* (美) 전비, 주행거리, 충전소요시간 등 / (英) 전비, 주행거리,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

**<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(안) >**

| 구분 \ 등급 | 1 | 2 | 3 | 4 | 5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(신설)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(km/kWh)** | **5.9 이상** | **5.8 ~ 5.1** | **5.0 ~ 4.3** | **4.2 ~ 3.5** | **3.4 이하** |
| (현행)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(km/L) | 16.0 이상 | 15.9~13.8 | 13.7~11.6 | 11.5~9.4 | 9.3 이하 |

※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·표시 대상에서 제외

○ 개정안이 시행되면 '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**20% 미만만이 1등급(2.0%) 또는 2등급(16.9%)에 해당**하게 되므로 **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**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*< 전비등급별 모델 분포('22년말 기준) >**

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(km/kWh) | 5.9 이상 | 5.8 ~ 5.1 | 5.0 ~ 4.3 | 4.2 ~ 3.5 | 3.4 이하 |
| 모델비율(%) | 2.0 | 16.9 | 27.7 | 29.1 | 24.3 |
| 모델수(개) | 3 | 25 | 41 | 43 | 36 |

2 또한, **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·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**할 수 있도록 **디자인을 개선**하고 **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**한다.

○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**연비·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**하고, **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**하였다.

**<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(안) 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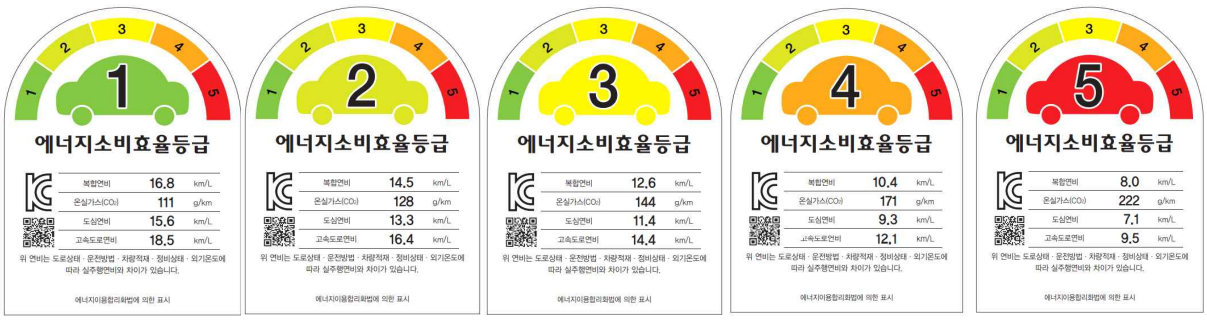



**< 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(안) >**

- 전기차 효율등급(1~5) 표시라벨




- 내연기관차 효율등급(1~5) 표시라벨




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·등급 **신고대상 차종,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,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**을 명시하는 등 **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**되었다.

○ **업계 요청사항을 반영***하여 자동차의 **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**하고, **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**하여 자동차 효율 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.

* 「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」('22.12.8, 관계부처 합동)

□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,

○ 전기차를 포함한 **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**된다.

○ 한편, 개정안의 **시행('23.6.1.)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**한 후 '23.12.1.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는 **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하여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·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**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(www.motie.go.kr) > "예산·법령" > "행정예고"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○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'23.3.16.**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*◇ 보내실 곳**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

**◇ 기재사항**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【 별 첨 】 「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